
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12. 30.(수) 총 4매(본문2, 붙임2)	
	담당 부서	•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, 사무관 이재민 • ☎ (044)201-3365(친환경주택 건설기준) • 녹색건축과 과장 엄정희, 사무관 박덕준 • ☎ (044)201-4094(에너지절약 설계기준)	
	2015년 12월 31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30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,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

-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, 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‘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’(고시)*과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’(고시)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(개정)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이하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

-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’에서 “친환경주택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,
-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‘에너지절약 설계기준’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.

<참고>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추가되는 ‘에너지절약 설계기준’ 의무사항

구 분		주 요 내 용
기계부문 의무사항	설계용 외기조건	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 규정(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위험율 25% 등)
	열원 및 반송설비	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등
전기부문 의무사항	수변전 설비설치	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할 것
	간선 및 동력설비	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

-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, 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’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·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,
 -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.
-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(‘14.9.3)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,
 -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.
-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,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.
-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.

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,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(전용콜 : 044-201-4817, 전용메일 : nextism2@korea.kr)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재민 사무관(☎ 044-201-33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추진배경

-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‘친환경주택 건설기준’을 준수토록 규정('09.10~)

□ 주요내용

- (대상)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(설계조건) 에너지사용량을 40%이상(전용 60㎡이하는 30%) 절감
 - ※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되, 설계기준 불충족시 친환경주택 평가방법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달성하도록 유도
 - (의무사항) 고효율 설비(변압기 등)·조명기기, 대기전력차단장치, 일괄 소등스위치, 실별온도조절장치 및 절수형설비 등
 - (권장사항) 친환경 자재 사용,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,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및 신·재생에너지의 설치 등
- (사업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)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,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여부 확인

□ 평가개요

- (평가항목)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, 급탕, 열원, 전력 등 4개로 분류하고, 총 30여개 항목*
 - * 외벽, 창호, 현관문, 방화문, 발코니외측 창호, 최상층 지붕, 최상층 바닥, 창면적비, 창호기밀, 열원설비,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
- (평가방법) '09년 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(세대 및 단지)의 단열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(CO₂ 저감량) 평가

□ 제도개요

-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·기계·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 의무·권장사항 규정
- 연면적 합계 5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·권장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,
 - 허가관청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EPI점수 65점 (공공건축물 74점)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승인
 - * EPI(에너지성능지표; Energy Performance Index) :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의 권장사항 지표를 점수화하여 성능 및 적용여부 등에 따라 평가

□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항목

- (의무사항) 건축, 기계, 전기부문의 의무 적용 사항 규정
 - (건축)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, 방풍구조 등
 - (기계) 냉·난방설비용량계산, 펌프, 배관 및 덕트의 보온 준수 등
 - (전기) 대기전력설비·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등
- (권장사항) 건축, 기계, 전기,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지표 점수화
 - (건축) 평균 열관류율, 외단열, 창 및 문의 기밀성, 차양장치 등
 - (기계) 냉·난방기기의 효율, 폐열회수형 환기장치, 펌프 및 공조기 팬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
 - (전기) 조명밀도, 고효율전동기, 조명 자동제어설비, LED 조명기기,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, BEMS 등
 - (신재생) 난방·냉방·급탕·전기용량에 대한 신·재생에너지 용량 비율